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82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이강일 · 양부남 · 김현정
이성윤 · 김남근 · 한정애
허성무 · 채현일 · 장철민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 또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하고, 주주 간 형평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자기주식은 회사가 임의로 의결권 행사나 처분이 가능한 형태로 보유할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며, 특히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될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큼.

이에 따라,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가치 제

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다만,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의 유연성은 유지하고자 함.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법제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343조의2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3조의2(자기주식의 소각) 회사는 제341조에 따라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

1. 임직원에게 대한 상여금, 퇴직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 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3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3조의2(자기주식의 소각) 회</u> <u>사는 제341조에 따라 취득(자</u> <u>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u> <u>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u> <u>포함한다)한 자기주식을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u> <u>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처</u> <u>분할 수 있다.</u> <u>1.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u> <u>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u> <u>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기</u> <u>위한 경우</u> <u>2.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u> <u>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